



VII. 종합부동산세 신고 · 납부방법



1. 종합부동산세법 액심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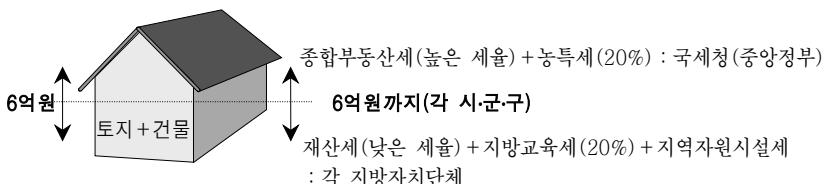
구 분	주 택	토 지																				
과세기준일	○ 재산세의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																					
납세의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 초과하는 자 (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기초 공제 3억 추가인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-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소재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초과하는 자(개인은 세대합산) - 별도합산과세대상은 80억원 초과하는 자 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(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9억)을 공제한 금액에 80%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(임대주택, 비수도권 소재 1주택, 다가구 임대주택, 기숙사, 사원용 주택, 미분양 주택 제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합합산과세대상 ⇨ 토지분 공시 가격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 × 80%(공정시장가액비율) ○ 별도합산과세대상 ⇨ 80억원을 공제한 금액 × 80%(공정시장가액비율) 																				
세 율 (농특세 20% 부담)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억 이하</td> <td>0.5%</td> </tr> <tr> <td>6억 초과 12억 이하</td> <td>0.75%</td> </tr> <tr> <td>12억 초과 50억 이하</td> <td>1%</td> </tr> <tr> <td>50억 초과 94억 이하</td> <td>1.5%</td> </tr> <tr> <td>94억 초과</td> <td>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세액 공제 5년 이상 보유 20%, 10년 이상 보유 40% ○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고령자 세액공제 60세 이상 10%, 65세 이상 20%, 70세 이상 30% 	과세표준	세 율	6억 이하	0.5%	6억 초과 12억 이하	0.75%	12억 초과 50억 이하	1%	50억 초과 94억 이하	1.5%	94억 초과	2%	<p>《종합합산과세대상》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5억원 이하</td> <td>1,000분의 7.5</td> </tr> <tr> <td>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</td> <td>1,125만원 + 15억 초과액의 1.5%</td> </tr> <tr> <td>45억원 초과</td> <td>1,000분의 2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세 율	15억원 이하	1,000분의 7.5	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	1,125만원 + 15억 초과액의 1.5%	45억원 초과	1,000분의 20
과세표준	세 율																					
6억 이하	0.5%																					
6억 초과 12억 이하	0.75%																					
12억 초과 50억 이하	1%																					
50억 초과 94억 이하	1.5%																					
94억 초과	2%	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세 율																					
15억원 이하	1,000분의 7.5																					
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	1,125만원 + 15억 초과액의 1.5%																					
45억원 초과	1,000분의 20																					

구 分	주 택	토 지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고령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 	<p>《별도합산과세대상》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 세 표 준</th><th>세 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0억 이하</td><td>1,000분의 5</td></tr> <tr> <td>200억 초과</td><td>1억원+ 200억 초과액 0.6%</td></tr> <tr> <td>400억 이하</td><td>2억2천+</td></tr> <tr> <td>400억 초과</td><td>400억 초과액 0.7%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과 세 표 준	세 율	200억 이하	1,000분의 5	200억 초과	1억원+ 200억 초과액 0.6%	400억 이하	2억2천+	400억 초과	400억 초과액 0.7%
과 세 표 준	세 율											
200억 이하	1,000분의 5											
200억 초과	1억원+ 200억 초과액 0.6%											
400억 이하	2억2천+											
400억 초과	400억 초과액 0.7%											
납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년 12월 1일~12월 15일 											
가 산 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고불성실가산세 ⇌ 미신고 20%, 과소신고 10%, 부당신고 40% 납부불성실가산세 ⇌ 미납부 · 미달납부세액 × 미납기간 × 0.03% 											
물납 · 분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액 1,000만원 초과시 물납 및 세액 500만원 초과시 분납(2개월 내) 가능 											

2.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론 개요

(1) 과거의 재산세(지방세) · 종합토지세(지방세)와 현행 재산세(지방세) · 종합부동산세(국세)의 비교

-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구분 -



구 分	종 전(2004년)		현 행(2005년부터)	
	재 산 세 (건 물)	종합토지세 (토 지)	재 산 세 (토지 + 건물)	종합부동산세 (토지 + 건물)
과세 요점	여러 단계의 초과누진세 율	낮은 금액에 낮은 세율	기준초과금액에 높은 세율	
과세 대상	건축물(주 토 지 택 포함)	주 택 토 지	주 택 토 지(종합, 별도합산)	
납세 의무 자	6. 1 현재 재산소유자	매년 6. 1 현재 재산소유자	매년 6. 1 현재 재산소유자 ◦ 주택 : 6억 원 초과자 ◦ 토지(종합합산) : 5억 원 초과자 ◦ 토지(별도합산) : 80억 원 초과자	



구 分	종 전(2004년)		현 행(2005년부터)	
	재 산 세 (건 물)	종합토지세 (토 지)	재 산 세 (토지+건물)	종합부동산세 (토지+건물)
과세 권자	재산소재지 관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	재산소재지 관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	주소지 관할세무서장	
과세 방법	물건별 과 세	과세대상 유 형별 전국합 산 세액계산 물건소재지 관내별 세액 안분과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 택 (부 속 토 지) : 물건별 통 합과세 ○ 토지 : 관내합산 과세(과세대상 유형별 구분) 	개인별 전국합산과세 주택, 토지(종합합산) 토지(별도합산) 구분
과세 표준	시가표준액	개별공시지 가 × 적용비 율(전국 평 균 39.2%)	시가표준액 × 공정시장가액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택 : [공시가액 - 6억원(1세대 1주택자는 9억원)] × 80% ○ 종합합산토지 : (공시가액 - 5억 원) × 80% ○ 별도합산토지 : (공시가액 - 80억 원) × 80%
세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 택 : 6 단계 누 진세율 ○ 기타 : 단 일세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토지(종합, 별도) : 9 단계 누진 세율 ○ 토지(분리 과세) : 단 일세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 택 ○ 토지(종합, 별 도) : 3단계 누 진세율 ○ 토지(분리과 세) : 단일세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 택 ○ 토지(종합, 별도) : 3단계 누진 세율
납부 기한	7. 16~ 7. 31	10. 16~ 10. 3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택 : 7.16~7.31 (50%) ○ 토지 : 9.16~9.30(50%) ○ 토지 : 9.16~9.30 	12. 1~12. 15
추가 세금	지방교육세, 도시계획세, 공동시설세	지방교육세, 지역자 원시설세	농어촌특별세(20%)	
징수 방법	보통징수(부과징수)	보통 징수(부과징 수)	2008년부터 부과징수	
세 부 담 상 한 액	해당없음.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년도 세액의 150% ○ 주택은 공시가 격에 따라 직전 년도 세액상당 액의 3억원 이 하 105%, 3억 원~6억원 이하 110%, 6억원 초과 13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택 · 종합합산토지 : 전년도 세 액상당액의 150% ○ 별도합산토지 : 전년도 세액상당 액의 15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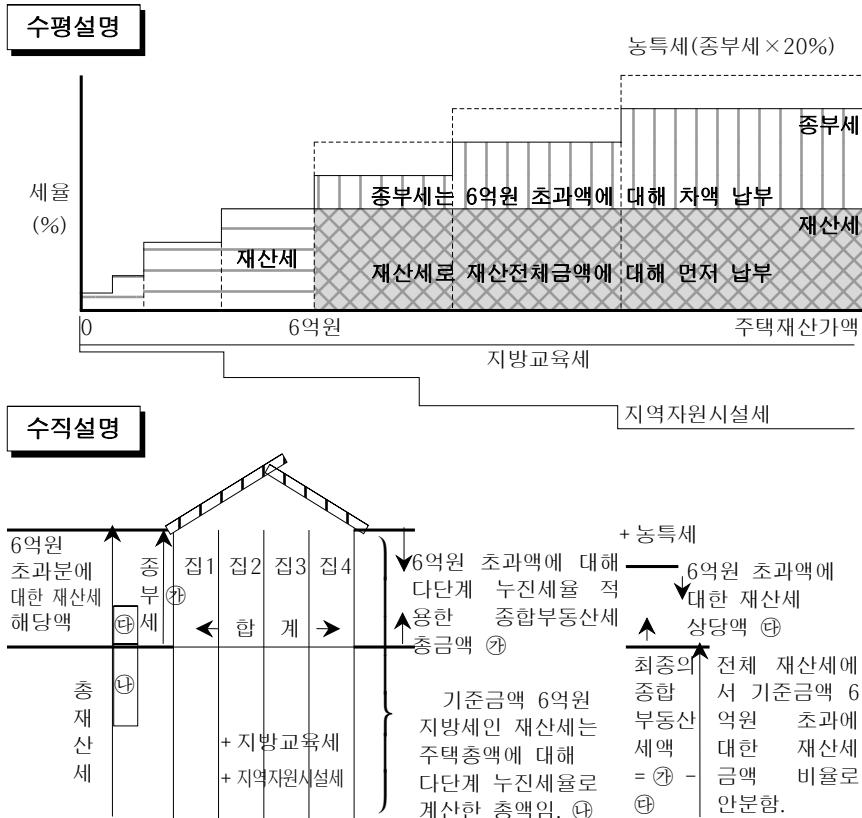
(2) 각 부동산 종류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관계 개관

구 分	주 택 (토지+건물의 전체합계금액으로 과세됨)		건 물 건축물 (공장상용이 건축물을 부분금액임)	토 지			
				④ 종합합산·유후토지 (⑥, ⑦ 제외)		⑥ 별도합산·실용토지	
	내 역	일반주택 (토지+건물) ②(③, ④ 제외) 임대용, 상가, 사무실용 등	별장주택 (토지+건물) ①시자연 등 지정주거지 여기 공용 오피장용 건물을	⑤ 골프 장, 고급 오피장용 토지나 대지유후토지 보유	시 지역 공장부지, 일반건물 부지, 임대용 토지나 대지유후토지 과다 사업용 토지	⑦ 분리과세 저 울 일반을 고 울 저울 고울 고급 락장 토지	
재산세 납 기	01차(50%): 7. 16~7. 31 02차(50%): 9. 16~9. 30	매년 7. 16~7. 31 (매년 6월 1일 기준)			매년 9. 16~9. 30 (매년 6월 1일 기준)		
재산세율 (지역자원이 설세 초기됨)	0.6천: 0.1% 0.1억5천: 0.15% 0.3억: 0.25% 0.3억 초과: 0.4%	전체액×4% 이주 높은을 낮은을	과세표준 ×0.25% 낮은을	과세표준 ×0.5% 높은을	0.5천: 0.2% 0.1억: 0.3% 0.1억 초과: 0.5% 높은을	0.2억: 0.2% 0.1억: 0.3% 0.1억 초과: 0.4% 보통을	0.07% 최저율 단일율 4% 최고 율
종 합 부동산세 (12월 1일~ 12월 15일 부과징수일) 농어촌특별세 20%가 추가됨.	적법입대주택, 기숙사, 사무용 주택, 미분양주 택은 과세 제 의	별장은 4%의 제일 높은 율 로 재산세가 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므로 종합부동 산세는 과세 되었으므로, 종 부세는 과세 제외되는 과가 됨.	주택이 아닌 일반상용 부동산의 건물 부분은, 기정상승원인이나 시간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므로 종합부동 산세가 과세되지 않음(주택이 아닌 다른 건축물은 재산세만 부과됨).	05억원 초과금액만 과세 05억 초과액 중 -15억 이하: 0.75% -15억~45억: 1.5% -45억 초과: 2% [적용율] 80%	080억원 초과금액만 과세 080억 초과액 중 -15억 이하: 0.5% -200억~400억: 0.6% -400억 초과: 0.7% [적용율] 80%	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 지 않음(기차가 낮거나 재산세가 이미 높은 율 로 과세되었으므로).	
	○ 주택전체 공시기합계액 에서 6억까지는 제외 ○ 6억 초과액의 과세표준 중 -6억 이하: 0.5% -6억~12억: 0.75% -12억~50억: 1% -50억~94억: 1.5% -94억 초과: 2% [적용율] 80% ○ 6억 초과액에 대한 기 납부 재산세액은 폐증.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세관계 종합도해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산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준금액 → 지방교육세 → 지역자원시설세 → 종합부동산세 → 농특세(20%) → 농특세(20%) → 중부세선</p>				
재산세와 종 합 부동산세 차감관계 도시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 택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주택 건물부분</p> <p>종합부동산세는 과세안됨. 4%</p> <p>0.5% → 재산세만 납부함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토 지</p>				
	<p>6억원 재산기액 · 재산세는 전체금액에 대해 먼저 납부 · ⑦+⑧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액에서 ⑧재산세 중복부분을 뺀 나머지로 위의 ④종합부동산 차액만 납부함.</p> <p>재산세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됨.</p>	<p>5억원 등 재산기액 ⑦+⑧의 총종합부동산세에서 ⑧의 재산세 중복부분을 뺀 나머지 ④의 순차감액만을 납부함.</p>					



3.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쉬운 예설

(1) 종합부동산세 계산과정 그림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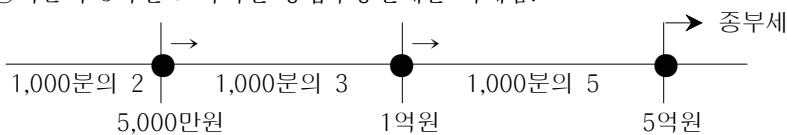


4.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쉬운 예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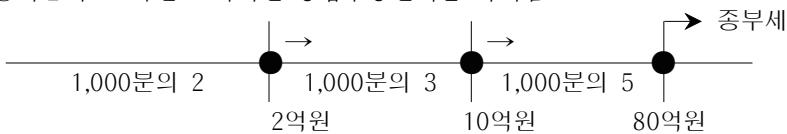
(1)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비교

재산세=토지의 공시가격 ×(공정시장가액비율 : 70%)×(각 과세표준 단위별
다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됨)

- ②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: 공시가×공정시장가액비율=과세표준 계산금액에 대해
④ 기준액 5억 원 초과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.



- ④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: 공시가×공정시장가액비율=과세표준 계산금액에 대해
④ 기준액 80억 원 초과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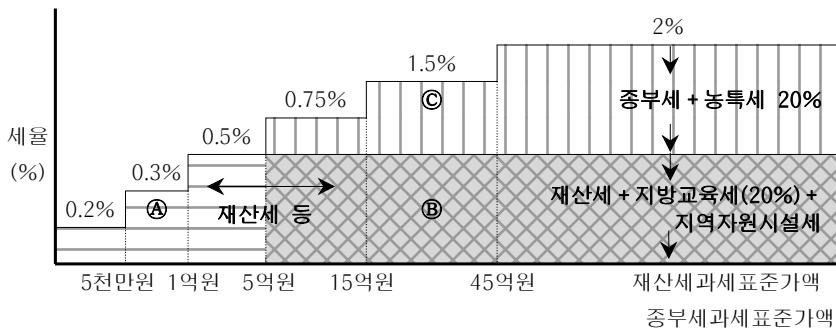
- ④ 분리과세대상토지 : 공시가×공정시장가액비율=과세표준 계산금액에 대해
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음.
- 전 · 답 · 과수원 · 목장용지 · 임야 등 : 1,000분의 0.7,
- 골프장, 고급오락장용 토지 : 1,000분의 40, 나머지는 1,000분의 2

(2) 기준금액 5억원 초과액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종복과세의 차감

-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(5천만원 이하, 1억원 이하, 1억원 초과로 구분)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(0.2%, 0.3%, 0.5%)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(아래 그림에서 ④ + ④에 해당).
-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은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 (15억원 이하, 45억원 이하, 45억원 초과로 구분)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(0.75%, 1.5%, 2%)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(아래 그림에서 ④ + ④에 해당).
-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으로 산출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할 세액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서 ④에 해당하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.



- 따라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미 과세된 토지분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아래 그림에서 ②에 해당하는 세액을 계산하여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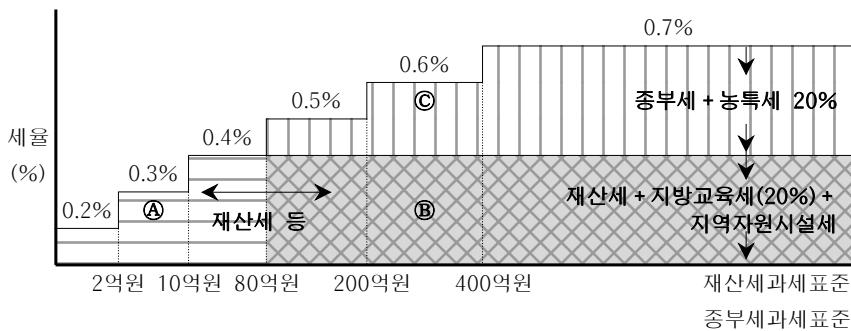
①+②=종합합산대상토지분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액(+지역자원시설세 등)

②+③=토지분 종합합산 종합부동산세액으로 산출되는 세액

따라서 ②부분이 중복과세되므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으로 산출된 최종세액(②+③)에서 ②금액을 차감하는 것임(여기에는 농특세 20%가 추가됨).

(3) 기준초과금액에 대해 별도합산토지분의 재산세로 기납부한 세액의 차감

-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(2억원 이하, 10억원 이하, 10억원 초과로 구분)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(0.2%, 0.3%, 0.4%)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(아래 그림에서 ①+②에 해당).
- 토지분 별도합산대상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액 80억원을 차감한 후 초과하는 구간(200억원 이하, 400억원 이하, 400억원 초과로 구분)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(0.5%, 0.6%, 0.7%)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(아래 그림에서 ②+③에 해당).
- 토지분 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를 산출된 대로 납부할 세액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서 ②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된다.
- 따라서 토지분 별도합산 종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, 이미 과세된 토지분 재산세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에서 ②에 해당하는 세액을 계산하여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.



①+②=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액(+지역자원시설세)

②+③=토지분 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액으로 산출되는 세액

따라서 ②부분이 중복과세되므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으로 산출된 세액(②+③)에서 ②금액을 차감하는 것임(여기에 농특세 20%가 추가됨).

"특별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" Taxpark.com에서의
비공개 재경상담서비스 특별회원 실시

- ▣ 특별회원 격상가입으로 나만 누릴 수 있는 혜택
- ▣ 30분내 전자문서 답글, Taxpark.com 상담코너
- ▣ 가입문의 : ☎ 3272-3084

